

가사 서비스 산업: 자택 요양 근로자 COVID-19 요건

본 문서는 가사 서비스 산업에 적용되며 자택 요양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본 문서의 목적상, 가사 서비스 근로자는 1인 이상의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택 요양 근로자로서 개인 주택 내에서 또는 그와 관련된 개인 또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가사 서비스 종사자에는 시간급 및 봉급 직원, 개인 노동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계약자, 정규직 및 파트타임 근로자 및 임시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고용주에는 자택 요양 근로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고용 주체, 개인, 가구, 고용주(예: 직업소개소 및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포함됩니다. 2인 이상의 고용주가 있는 경우, 고용주/직원 고용 관계에 대한 요건이 각각 적용됩니다.

다른 가사 근로자의 경우 주지사 선언 20-05에 따라 해당 업무가 필수 업무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에서 다루어집니다. 자택 요양 근로자는 개인 주택 내 또는 부근에서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 노인, 기타 취약한 사람에게 개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식사, 목욕, 의류 착용 등 “일상 생활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자택 요양 근로자는 일상 생활 활동을 돕는 것 외에도, 개인이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 생활의 도구적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택 요양 근로자에는 [RCW 18.88B](#)에 따라 State Department of Health가 인증한 사람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택 요양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주지사 선언 20-05에 따라 필수 업무로 간주되며 따라서 많은 서비스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유지됩니다. 고용주와 개인 자택 요양 근로자는 아래에 문서화된 건강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조항이 단일 근로자의 고용주에게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고용주가 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택 요양 서비스업 근로자는 업무 수행 거부, 유급 병가 이용, 실업 급여 접근 능력에 있어 불균형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인정됩니다. 모든 고용 상황에서 고용주는 근로자가 근로자 보호 접근 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요건

모든 자택 서비스 고용주는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유지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주지사의 “Safe Start” 선언 20-25.4에 요약된 다음과 같은 COVID-19 작업 현장별 안전 관행을 준수해야 하며 L&I [일반 요건 및 작업장 예방 아이디어를 따라야 합니다](#). 워싱턴 주 Deptment of Health, 워싱턴 주 State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 지침 문서를 개발했습니다:

- [워싱턴 주 자택 내 요양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건강 권고안](#)
- [COVID-19 발생 기간 중 안전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워싱턴 주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개별 서비스 제공자\(IPs\) 지침](#)

자택 요양 기관 및 워싱턴 주 같이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고용주 또는 공동 고용주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COVID-19 요건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 코로나바이러스 및 전염을 방지하는 방법과 고용주의 COVID-19 정책에 대해 교육합니다.
- 모든 직원과 고객 사이의 모든 상호 작용 시 6 피트의 거리를 최대한 실현 가능한 범위로 유지합니다. 특정 작업에 대한 엄격한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장벽 사용, 좁거나 밀폐된 구역의 직원 또는 고객 최소화, 시차를 둔 휴식, 근무 교대 시작 등의 다른 예방 조치를 사용합니다.
- 직원들에게 수행 중인 활동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장갑, 고글, 페이스 실드, 페이스 마스크 같은 개인 보호 장비(PPE)를 무료로 제공하고 착용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 얼굴 덮개 및 마스크 요건](#)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VID 양성 확진자 또는 증상이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택 요양 근로자는 “극히 높은 위험” 상황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적절한 PPE 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무증상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택 요양 근로자는 '중간 위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PPE 를 추가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직물로 된 안면 덮개를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며,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 의 안전 및 보건 규칙 및 지침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지시되지 않는 한 혼자 작업하지 않는 모든 근로자 또는 지역 사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면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Department of Health 지침](#)에 따른 직물 소재 안면 덮개 직물 소재 안면 덮개 요건의 예외로는 사무실, 차량 또는 직장에서 혼자 일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거나, 의사소통의 일부로 얼굴 마커와 표정 및 입의 움직임과 같은 언어 신호에 의존하는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경우 또는 의학적 상태나 장애가 있어서 안면 커버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상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에 나열된 항목을 포함하여 COVID-19 요건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 소비자가 고용하고 DSHS 를 통해 개별 서비스 제공자로 급여를 받는 자택 요양 근로자는 고객-고용주가 선택, 일정 조정, 감독합니다. 이러한 경우 DSHS 는 COVID 의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발행합니다:

- 공급품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 손세척을 자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공유되는 도구 또는 기타 물품을 통한 바이러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하고 적절한 일회용 장갑을 사용합니다.
- 일반적으로 접촉되는 표면을 자주 청소하고 소독할 수 있게 합니다.
- 근무 시작 시 COVID-19 의 신호/증상을 검사합니다. 자택 요양 근로자가 아프거나 아픈 것처럼 보이면 집에 머무르게 하거나 즉시 퇴근하게 합니다. COVID-19 감염 가능성이 있거나 확진된 직원이 작업하거나 표면을 만진 모든 구역 및 장비를 세척하고 소독할 때까지 해당 구역을 차단합니다.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가 정한 [청소 지침](#) 에 따라 철저하게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의 결과로 COVID 양성 확진된 개인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자택 요양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근로자는 COVID-19 로 인한 위험을 포함하여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택 요양 근로자는 사회복지나 또는 기관 감독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RCW 49.17 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개인의 업무 거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에 따라 안전 보호 활동을 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다음 발행물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내 안전 및 보건 차별 책자](#) 및 [스페인어로 된 안전 및 보건 차별 책자](#).

COVID-19에 대한 노출 위험으로 인해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작업장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한 근로자는 특정 휴가 또는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대체 작업 배치가 실현 불가능할 경우 고용주가 부여한 기본일수가산휴가 또는 실업 수당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선언 20-46으로 보장되는 고위험 개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근로자는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 실업 급여 또는 상황에 따른 유급 휴가에 포함된 연장된 가족 휴가 및 의료 휴가 확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워싱턴 Family Care Act 및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에 따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자원](#) 및 유급 휴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택 요양 근로자:

또한 근로자는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1. 아프면 집에 머뭙니다. COVID 양성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경우 고용주에게 통지합니다.
2. COVID-19에 감염되어 아픈 가족이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알립니다. COVID-19로 인해 아픈 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주 보건부 에서 정한 고립/격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출근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걸어 자택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열, 기침, 숨 가쁨 등의 새로운 증상을 겪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만약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연기할 수 있는지 고려하거나 COVID-19 자택 요양 지침 문서에 열거된 목록을 따릅니다.
4. 가능하다면 자택 내에서 항상 본인과 다른 사람 사이에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합니다. 특정 작업에 대한 엄격한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직물 소재 안면 덮개와 PPE 등과 같은 다른 예방 조치를 사용합니다.
5. 근무 시작 및 종료 시, 식품 준비 전후 또는 체액 접촉 전후에 손을 자주 씻습니다. 비누와 물을 사용해 20 초 이상 손을 씻거나 알코올이 60% 이상 함유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6. 집 안에 있는 표면이나 물체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일하는 동안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세척합니다.

자택 요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별 고객 고용주:

7.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거나, 아프거나, COVID-19 관련 증상이 발생한 고객은 자택 요양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8. 자택 요양 근로자가 아프거나 아파 보이는 경우,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때까지 일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9. 자택 요양 근로자가 있는 경우 손을 자주 씻습니다.
10. 가능한 한 자택 요양 근로자와 최소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고 자택 요양 근로자와 가까운 곳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입니다.

작업장 지침

11. 자택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 사회 전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 직물 소재 안면 덮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들에게 모든 PPE 요건을 준수하도록 권장합니다. 가능한 경우,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가사 근로자와 멀리 떨어진 구역, 작은 방에서 더 큰 방으로 자리를 옮겨 가사 노동자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멀리 유지해야 합니다. 인지, 발달 또는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직물 소재 안면 덮개 및/또는 PPE를 착용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상호 작용 짧게 유지하기 중요한 세부 사항을 가상으로 논의할 수 없는 경우, 직접 대면하는 상호 작용을 짧게 유지하고 대화 내내 6피트 거리를 유지합니다. 인지, 발달 또는 기능 장애가 있으며 자택 요양 서비스를 받는 개인은 거리두기와 시간 제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작업장 또는 자택 내에서 휴지와 쓰레기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4. 고용주는 COVID-19에 대한 노출 위험으로 인해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작업장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5. 가사 근로자가 빈번한 청소 및 소독 등 추가 업무를 완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서면 합의서에 반영해야 하며,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16. 현장 근로자의 모든 교육은 급여를 받는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17. 가능하다면, 근로자는 근무 현장까지 차량당 1인만 탑승하여 따로 운전해 이동합니다.
18. 근로자가 중심 위치에서 만나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근무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1대의 차량을 할당하고 교대 근무시키지 않습니다. 회사 소유의 차량 또는 기타 여러 명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한 이동은 차량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되어야 하며 [코로나바이러스 안면 덮개 및 마스크 요건](#)에 설명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PPE를 참조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문제는 L&I's 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DOSH)의 집행 조치를 따릅니다.

- 고용주는 L&I's 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DOSH)에 COVID-19 [예방 조언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작업장 안전 및 보건 불만 사항은 L&I DOSH 안전 콜 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00-423-7233) 또는 adag235@lni.wa.gov 로 이메일 발송.
- 계약 관행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은 주 비즈니스 대응 센터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wa.gov/how-you-can-help/covid-19-business-and-worker-inquiries> 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선언 20-25 와 관련된 다른 위반 사항은 <https://bit.ly/covid-compliance> 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